

# 강사료 지급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서울신학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 교직원 보수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세부적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강의의 구분)** 대학교의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실험, 실습,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특수강의라 한다.
- ② 국내·외의 저명인 및 명예교수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 ③ 전호 이외의 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 ④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제3조 (강의의 책임시간)** 대학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1주간 책임시간 수는 9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2. 5. 30.>

**제4조 (미달시간)**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책임시간 수가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달된 시간 수는 다음 학기의 책임시간 수에 합산한다.

**제5조 (강사료의 지급)**

- ① 대학교의 강의 중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각각 강사료를 지급한다.
  1. 초과강사료는 초과 강의한 교원에게 실제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시간강사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3. 특별강의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3.>
- ②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휴업 기간 중 강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강사료의 계산)** 대학교의 강사료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①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강사료를 계산한다. 단, 교회음악과 및 실용음악과의 실기와 기타 특정기능에 대한 실기지도는 보통 강의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6.9.2.>
- ② 강사료는 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한다. 다만 학기말 종강에 있어서는 1주 미만을 1주로 계산할 수 있다.
- ③ 수강인원이 80명에서 100명까지는 120%를 지급하고, 101명 이상은 150%를 지급한다. 단, 수강인원의 계산은 최종성적보고서에 등재된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7. 5. 8.>
- ④ 대학 및 대학원에서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에는 1교시 당 초과강사료의 100%를 지급한다. <개정 2007. 5. 8., 2012. 9. 12.>
- ⑤ 정규수업시간에 전임교원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한다. 단, 교무처장과 각 대학원장이 판단하여 인정될 경우 총장의 결재를 거쳐 특강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7. 5. 8., 개정 2008. 8. 25., 2010. 9. 2., 2018.05.15.>

**제7조 (보직교수의 책임시간)**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계산한다.

① 보직수행을 위한 주당 책임시간

직책명	주당책임시간
부총장	3시간
처장,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신학전문대학원장, 생활관장, 평가지원실장, 대외협력실장	5시간
신학대학원 부원장	6시간
특수대학원장, 학과장, 평생교육원장, 교양학부장, 도서관장, 학보사 주간, 전산실장, 신학대학원 학생부장, 교육혁신원장	7시간
전임총장	6시간

② 보직수행을 위한 주당 책임시간 감면

직책명	주당감면시간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경력개발센터 소장, 학생상담센터 소장, 창업지원센터 소장, 목회현장훈련센터 소장, 목회자료센터 소장, 사회봉사센터 소장	-2시간
기숙사영어전용층 디렉터	-3시간
외국인학생 전담 담임교수	-1시간
인터내셔널카페 디렉터	-1시간

※ 신학대학원 생활관 새벽예배의 설교를 전담하는 경우 주당 책임시수를 2시간 감한다. 단 이 경우 최종 주당 책임시수를 5시간미만으로 할 수 없다.

<개정2017.08.08.>

[전문개정 2016.10.1.]

**제8조** (타 대학 출장에 대한 승인) 대학교의 교원이 타 대학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대학의 담당 시수를 합하여 주당 담당 총 시수는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9. 2.>

**제9조** (강사료 지급 기준액)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금액은 매 학년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10조** (강사료 지급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기간
2. 기타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할 때
3. 등록기간
4. 정규 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할 때

②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각 학교의 실제 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시간강사 포함)에 한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보충강의) 병가, 공가, 경조휴가, 특별휴가 및 공무로 출장에 의한 휴·결강의 경우 보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외국인 및 명예교수 초빙강사료) 외국인 및 명예교수 초빙에 의하여 항시 근무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상당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강사료는 총장이 정한다.

**제13조** (강사료 지급일) 강사료는 특별 강사료를 제외하고는 당월 분을 매월 25일에 지급하

되 당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0. 11. 24.>

**제14조** (내규 개·폐) 내규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7. 5. 8>

부 칙

내규는 199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내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내규는 201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내규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내규는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내규는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내규는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내규는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내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내규는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내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내규는 201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내규는 201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